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29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: 장경태·강득구·김남국

민형배 • 신동근 • 오영환

이소영 · 이용빈 · 장혜영

전용기 · 정춘숙 · 최혜영

이수진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고 입시위주의 학교운영과 경쟁지상주의적 교육문화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와 법 경시 경향, 정치불신에 따른 정치참여 저하,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.

또한, 사회진출과 대학진학을 앞 둔 고등학교에서의 노동권, 참정권과 같은 시민의 다양한 권리, 각종 의무 등 민주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은 학생이 사회진출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의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임.

이에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

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3항 등).

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0조의3제1항 중 "제23조제2항·제3항"을 "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교육과정 등) ①・② (생	제23조(교육과정 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
	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
	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
	우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
	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
	<u>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60조의3(대안학교) ① 학업을	제60조의3(대안학교) ①
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	
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	
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	
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	
또는 개인의 소질・적성 개발	
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	
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	
당하는 학교(이하 "대안학교"라	
한다)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,	
<u>제23조제2항·제3항</u> , 제24조부	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
터 제26조까지, 제29조 및 제30	
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	
용하지 아니한다.	

②・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